

투자로키우는 무배당 ABL 변액연금보험Ⅳ (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

※ 본 상품은 투자형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본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상품은 변액보험 상품으로 고객님께서 청약 전 투자 성향 및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적합성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 본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특약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특별계정 투입금액으로 하여 적립되고, 중도해지 시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 및 특약(다만, (무)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 및 (무)하모니변액연금전환특약의 경우,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함)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변액보험의 투자기능에 유연한 자금활용 기능으로 적극적으로 미래자산을 준비하세요.

투자로키우는무배당ABL변액연금보험IV (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

1 투자성향에 따른 다양한 펀드 선택 가능
총 46종의 다양한 펀드로 고객 선택 범위 강화

2 안전장치가 있는 변액연금보험
펀드자동전환옵션으로 목표 수익률 달성시 계약자가 선택한 채권형 또는 MMF재간접형 펀드로 자동 이전합니다.
※ 본 상품은 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 변액연금상품으로서 최저 연금 적립금(연금개시나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중도인출, 추가납입기능으로 유연하게 자금 활용 가능
• 중도인출수수료 :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 중도인출 시 해지환급금이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 시 추가납입수수료는 없습니다.

4 다양한 연금지급방법 및 연금전환 기능 선택 가능
연금개시 전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보증금액부), 확정연금형, 상숙연금형의 선택이 가능하고, 전환 조건 충족 시 (무)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 (무)하모니변액연금전환특약, (무)LTC연금전환특약, (무)6개월별연금전환특약 등의 가입으로 다양한 형태의 연금활용이 가능합니다.

5 보험료 할인 혜택 (적립형에 한함)
• 주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시 주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금액의 2.0% 할인
• 주계약 기본보험료 200만원 초과 시 주계약 기본보험료 200만원 초과금액의 2.5% + 20,000원 할인
다만, 할인금액은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최저연금적립금 : 연금개시나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 적립금을 말합니다.
- ※ 이 계약은 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으로,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더라도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 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의 경우,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연금 지급 개시시점에 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나의 투자 성향은?
자신의 투자 성향을 이해하고 투자를 시작하세요
변액보험에 매력을 느끼는 당신!!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
 -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자로 인한 원금 손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
 - 자신만의 투자원칙을 가지고 있는 분
- ▶ 청약 전 투자 성향 및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하기 위한 변액보험 가입성향 진단 (적합성 진단)을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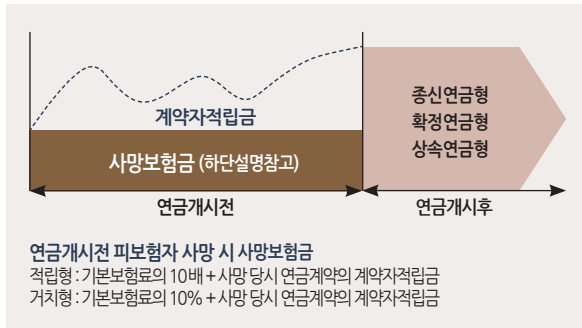
투자 성향	추천 펀드
위험 선호형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형 / 빅데이터국내주식형 / 월드와이드권슈머주식재간접형 / 유럽주식재간접형 /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 글로벌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 /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형
적극 투자형	글로벌하이일드채권재간접형 / 스마트롱수재간접형
위험 중립형	성장형 / 중소형 Best 주식 재간접형 / 인디아 포커스 재간접형 / 차이나 포커스 재간접형 / 글로벌 셀렉트 재간접형 /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안정 추구형	글로벌리츠형 / 주식혼합형 / 글로벌인덱스리스크 컨트롤형 /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 BRICs 주식형 / Index 혼합형 / Ko-BRICs 주식형 / 재팬인덱스형 / K200리스크 컨트롤형 / 인컴앤그로스재간접형 / 팀챌린지자산배분A형 / 팀챌린지자산배분B형 / 팀챌린지자산배분C형 / 팀챌린지자산배분D형 / 팀챌린지자산 배분E형 /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
위험 회피형	MMF 재간접형 / 토탈리던 글로벌채권 재간접형 / 채권형 / 글로벌 이머징마켓 혼합 재간접형 / 혼합 간접형 / 팀챌린지자산배분F형 / 이머징마켓 채권 재간접형 / 단기공공채재간접형 /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 고배당포커스 30채권혼합재간접형



※ 보험계약자의 변액보험 가입성향 진단에 따라 펀드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묻지마 투자'는 이제 그만!!
전문가와 꼼꼼히 상담 후 가입하세요~

보험금 지급 예시



보험금 지급 기준

주계약

구 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적립형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거치형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신연금형	연금개시나이
	상속연금형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까지
구 분	지급사유	지급내용
적립형	연금개시 전	기본보험료의 10배 + 사망 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거치형	피보험자 사망할 경우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 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약관의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다목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연금

① 중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지급 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구분	지급금액
정액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 : 10 ~ 40년/100세)
체증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연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10%)로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보증지급기간 후의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 : 10 ~ 20년)
소득 보장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 : 10~20년)

② 중신연금형 보증금액부

지급 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구분	지급금액	
일반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되도록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자유형	제1연금 기간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정한 제1연금연액
	제2연금 기간	제2연금기간 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 (취) 1.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은 보험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라'목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반영되는 기간 중에는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산출방식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2.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3. 연금연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해당 연도 연금연액은 직전 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자유형)의 제1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4. 이 보험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5.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또는 10%)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의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까지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 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7.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소득보장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더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 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8.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9.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자유형)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험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사' 및 제4호의 '라'목에서 정하는 제1연금연액과 제1연금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1연금기간은 5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제1연금기간동안 지급되는 제1연금연액의 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의 10%이상 80%이하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을 지급합니다.
12. 연금지급 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 보증지급기간의 보증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무)하모니변액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시 전환한 일시금을 실적배당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 동안 투자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최저연금적립금은 보장됩니다.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충하기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2) 노후설계자금 및 연금 지급기준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변경할 수 있고,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노후설계자금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다만, 1회에 한함)
지급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취) 1.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은 보험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라'목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반영되는 기간 중에는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2. 노후설계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까지 매일 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유지관리비용)을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 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이 0%인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연액이 산출됩니다.
3. 위에서 정하는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이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을, 확정연금형의 연금지급후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을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로 합니다.

2. 연금

①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구분	지급금액
정액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10 ~ 40년/100세)
체증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연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10%)로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보증지급기간 후의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10 ~ 20년)
소득 보장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보증지급기간:10 ~ 20년)

②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구분	지급금액	
일반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도록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자유형	제1연금 기간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정한 제1연금연액
	제2연금 기간	제2연금기간 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③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
지급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 5, 10, 15, 20, 30, 50, 60년)

④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지급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년도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의 1년 후 이자액을 연금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다만, 「1년 후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 2차년도 이후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

- ㉡ 1.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은 보험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라'목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반영되는 기간중에는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2.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3. 연금연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해당 연도 연금연액은 직전 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 보충금액부(자유형)의 제1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4. 이 보험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5.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종신연금형 보충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충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을 (5% 또는 10%)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충지급기간 경과 후의 연금연액은 보충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하고, 보충지급기간까지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 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7. 종신연금형 보충기간부의 소득보장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 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충지급기간의 실제 연금 연액은 보충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더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충지급기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 연액은 직전 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8. 종신연금형 보충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충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충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 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보충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 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9. 종신연금형 보충기간부의 경우 보충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 잔여보충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종신연금형 보충금액부(자유형)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험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사'목 및 제4호의 '라'목에서 정하는 제1연금연액과 제1연금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1연금기간은 5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제1연금기간동안 지급되는 제1연금연액의 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의 10%이상 80%이하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 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을 지급합니다.
12. 확정연금형의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 합니다.
13.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 보충기간부의 보충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된 연금지급기간)동안 잔여 보충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4.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 한 내용은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위한 안내 / 해지공제금액 예시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주계약	투자로키우는(무)ABL변액연금보험Ⅳ (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		
구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한도	가입단위
적립형	5년납, 7년납, 10년납 11년~(연금개시전 보험기간-5)년납	20만원 이상	1만원
거치형	일시납	1,500만원 이상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무)자유로연금전환특약 (무)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 / (무)하모니변액연금전환특약 / (무)6대질병연금전환특약 / (무)LTC연금전환특약 변액보험 보험계약대출 이용방법 변경특약/ 표준하체인수특약		

해지공제금액 예시표

기준 : 기본보험료 30만원, 남자 40세,
10년납, 월납, 연금개시나이 60세, 단위:원

기준 : 기본보험료 5,000만원, 남자 40세,
일시납, 연금개시나이 60세, 단위:원

적립형			거치형		
경과 시점	해지 공제금액	해지 공제비율	경과 시점	해지 공제금액	해지 공제비율
1년	246,857	6.9%	1년	0	0.0%
2년	205,714	2.9%	2년	0	0.0%
3년	164,571	1.5%	3년	0	0.0%
4년	123,429	0.9%	4년	0	0.0%
5년	82,286	0.5%	5년	0	0.0%
6년	41,143	0.2%	6년	0	0.0%
7년	0	0.0%	7년	0	0.0%
7년 이상	0	0.0%	7년 이상	0	0.0%

- 해지공제금액은 계약해지를 할 때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때 계약자 적립금에서 실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 해지공제비율은 이미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대비 해지공제금액의 비율입니다.

특별계정이란?

특별계정은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자산운용에 있어 자산을 다른 보험종류의 자산과 구분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용합니다. 이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대한 투자위험을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자산운용 손익의 정확한 배분과 자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특별계정을 설정함으로써 변액보험만의 자산을 독립하여 관리,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펀드의 특별계정 운용보수

이 상품은 46개의 펀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님의 투자성향에 맞추어 다양한 펀드 변경을 통하여 분산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 2020.11.30, 단위 : %

구분	운영 보수	투자일임 보수	수탁 보수	사무관리 보수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	0.4500	0.0500	0.0100	0.0150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형	0.4500	0.0500	0.0100	0.0150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0.4300	0.0100	0.0150	0.0150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0.4300	0.0100	0.0100	0.0150
벨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0.4300	0.0100	0.0100	0.0150
중소형 Best 주식재간접형	0.4300	0.0100	0.0100	0.0150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0.4500	0.0700	0.0100	0.0150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형	0.4500	0.0500	0.0100	0.0150
빅데이터국내주식형	0.4500	0.2500	0.0100	0.0150
월드와이드퀀텀주식재간접형	0.4500	0.0200	0.0100	0.0150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0.4500	0.0700	0.0100	0.0150
유럽주식재간접형	0.4500	0.0500	0.0100	0.0150
인컴앤그로스재간접형	0.4500	0.0700	0.0100	0.0150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	0.4500	0.0700	0.0100	0.0150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	0.4500	0.0200	0.0100	0.0150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0.5955	0.0100	0.0100	0.0150
글로벌하이일드채권재간접형	0.2000	0.0500	0.0100	0.0150
스마트롱숏재간접형	0.5955	0.0100	0.0100	0.0150
고배당포커스30채권혼합재간접형	0.3600	0.0100	0.0100	0.0150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0.4100	0.0100	0.0100	0.0150
성장형	0.5955	0.1600	0.0100	0.0170
팀챌린지자산배분A형	0.5955	0.2500	0.0100	0.0150

구 분	운영 보수	투자일임 보수	수탁 보수	사무관리 보수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팀챌린지자산배분B형	0.5955	0.2500	0.0250	0.0150
팀챌린지자산배분C형	0.5955	0.2500	0.0250	0.0150
팀챌린지자산배분D형	0.5955	0.2000	0.0250	0.0150
팀챌린지자산배분E형	0.5955	0.0000	0.0250	0.0150
팀챌린지자산배분F형	0.5955	0.2500	0.0250	0.0150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	0.5955	0.2500	0.0250	0.0150
글로벌리츠형	0.2805	0.3000	0.0250	0.0170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	0.3205	0.0800	0.0100	0.0170
단기국공채재간접형	0.3510	0.0100	0.0100	0.0150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0.3510	0.0100	0.0100	0.0150
주식혼합형	0.3610	0.1000	0.0100	0.0170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0.4205	0.0100	0.0100	0.0170
글로벌인덱스리스크컨트롤형	0.4305	0.2000	0.0100	0.0170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0.4350	0.2000	0.0250	0.0150
BRICs 주식형	0.4510	0.0100	0.0100	0.0170
Index 혼합형	0.4510	0.0100	0.0100	0.0170
Ko-BRICs 주식형	0.4510	0.0100	0.0100	0.0170
재팬인덱스형	0.5205	0.0100	0.0100	0.0170
K200리스크컨트롤형	0.5300	0.1200	0.0100	0.0150
MMF 재간접형	0.2805	0.0100	0.0100	0.0150
토탈리턴 글로벌채권 재간접형	0.3205	0.0800	0.0100	0.0170
채권형	0.3510	0.0100	0.0100	0.0170
글로벌 이머징마켓 혼합 재간접형	0.4205	0.0100	0.0100	0.0170
혼합간접형	0.5305	0.1000	0.0100	0.0170

※ 펀드의 특별계정운용보수(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는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 적립금의 해당비율로 차감합니다.

※ 이 보험은 투자형 상품으로 납입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납입원금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국내 및 해외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의 특별계정운용보수 이외에 수익증권 투자관련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계정에서 인출하여 사용합니다.

※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 해외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새로운 펀드가 추가되거나 펀드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펀드 특별계정운용보수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펀드의 특징

펀드명	펀드구성	성향	위험 등급
글로벌리츠 투게더 주식재간접형	전세계 증시에 상장된 일등 기업 및 혁신기업과 고소비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소비재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	위험 선호형	1등급
미국그로스 주식재간접형	미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이러한 우량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	위험 선호형	1등급
글로벌인프라 주식재간접형	전세계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처자산에 관련된 주식, 집합투자 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	위험 선호형	1등급
네비게이터 주식재간접형	국내 주식 100% 이내 투자	위험 중립형	3등급
밸류고배당 주식재간접형	국내주식 100% 이내 투자, 고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	안정 추구형	4등급
중소형Best 주식재간접형	국내주식 100% 이내 투자,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	위험 중립형	3등급
글로벌배당인컴 주식재간접형	글로벌주식 100% 이내 투자, 고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	안정 추구형	4등급
글로벌 테크놀로지 주식재간접형	전세계 상장된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혹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기업 관련된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100% 이내로 투자	위험 선호형	1등급
빅데이터 국내주식형	빅데이터기업을 활용한 중목을 선별하여 국내주식, 집합투자 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	위험 선호형	1등급
월드와이드 컨슈머 주식재간접형	전세계 선진 및 이머징 시장의 소비자 구매력 성장과 소비활동 증가에 관련되어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높은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100% 이내로 투자	위험 선호형	1등급
유럽배당주식 재간접형	유럽지역 주식 100% 이내 투자, 고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	안정 추구형	4등급
유럽주식 재간접형	유럽 지역의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	위험 선호형	1등급
인컴엔그로스 재간접형	미국 시장 중심으로 주식, 하이일드, 전환사채 100% 이내 투자	안정 추구형	4등급
인디아포터스 재간접형	인도 지역 관련 주식 100% 이내 투자	위험 중립형	3등급
차이나포터스 재간접형	중국, 홍콩 지역 관련 주식 100% 이내 투자	위험 중립형	3등급
베트남그로스 주식재간접형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	위험 선호형	1등급
글로벌하이일드 채권재간접형	글로벌 고수익 채권 또는 이러한 채권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	적극 투자형	2등급
스마트롱숏 재간접형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을 대상으로 한 롱숏전략을 주된 운용 전략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	적극 투자형	2등급

펀드명	펀드구성	성향	위험 등급
고배당포커스 30채권 혼합재간접형	국내주식(배당주중심) 30%이내, 국내채권 70%이내 투자	위험 회피형	5등급
글로벌다이나믹 채권재간접형	전세계채권 100%이내 투자, 채권대상자산배분 전략을 사용	위험 회피형	5등급
성장형	국내 주식 90%이내, 국내 채권 10% 이내, 나머지 유동성자산에 투자	위험 중립형	3등급
팀챌린지 자산배분A형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 투자증권 또는 관련 파생상품 등에 100% 이내 투자, 나머지 유동성 자산에 투자	안정 추구형	4등급
팀챌린지 자산배분B형	(삼성자산운용)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투자 증권 또는 관련 파생상품 등에 100% 이내 투자, 나머지 유동성 자산에 투자	안정 추구형	4등급
팀챌린지 자산배분C형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 집합투자증권 또는 관련 파생상품 등 100% 이내 투자, 나머지 유동성 자산에 투자	안정 추구형	4등급
팀챌린지 자산배분D형	(ABL글로벌자산운용)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 투자증권 또는 관련 파생상품 등에 100% 이내 투자, 나머지 유동성 자산에 투자	안정 추구형	4등급
팀챌린지 자산배분E형	(하나UBS자산운용)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 투자증권 또는 관련 파생상품 등에 100% 이내 투자, 나머지 유동성 자산에 투자	안정 추구형	4등급
팀챌린지 자산배분F형	(한화자산운용)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투자 증권 또는 관련 파생상품 등에 100% 이내 투자, 나머지 유동성 자산에 투자	위험 회피형	5등급
인공지능 팀챌린지 자산배분형	(이스트프링자산운용)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 집합투자증권 또는 관련 파생상품 등에 100% 이내 투자, 나머지 유동성 자산에 투자	안정 추구형	4등급
글로벌 리츠형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 리츠에 70% 이내, 국내채권 20% 이내, 나머지 유동성자산에 투자	안정 추구형	4등급
이머징마켓 채권재간접형	이머징마켓채권 100%이내 투자	위험 회피형	5등급
단기국공채 재간접형	단기국공채 100% 이내 투자	위험 회피형	5등급
베스트국공채 재간접형	국내 국공채 100% 이내 투자	위험 회피형	5등급
주식혼합형	국내주식 60%이내, 국내채권 30%이내, 나머지 유동성 자산 투자	안정 추구형	4등급
글로벌셀렉트 재간접형	전세계 대표적인 성장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90% 이내, 나머지 유동성자산에 투자	위험 중립형	3등급
글로벌인덱스 리스크컨트롤형	KOSPI200, S&P500, HSCEI지수 0% ~ 90% 이내 투자	안정 추구형	4등급
글로벌다이나믹 멀티에셋형	전세계 다양한 자산군(주식, 채권, 원자재, 단기자산 등) 100% 이내	안정 추구형	4등급

펀드명	펀드구성	성향	위험 등급
BRICs주식형	BRICs 지역 주식 70%이내, 나머지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	안정 추구형	4등급
Index혼합형	KOSPI200지수 수익률 추종하는 국내주식 60% 이내, 나머지는 국내채권 및 유동성 투자	안정 추구형	4등급
Ko-BRICs 주식형	KOSPI200 인덱스 및 BRICs지역 주식 70% 이내, 나머지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	안정 추구형	4등급
재팬인덱스형	일본지역 주식 및 국내외주식에 50% 이내, 나머지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	안정 추구형	4등급
K200리스크 컨트롤형	KOSPI200지수 0~100%이내 투자	안정 추구형	4등급
MMF 재간접형	신용등급이 우량한 채권, CD 및 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 또는 이러한 단기금융상품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	위험 회피형	5등급
토탈리턴글로벌 채권재간접형	국내외 채권 100% 이내 투자	위험 회피형	5등급
채권형	국내 채권 95% 이내 투자	위험 회피형	5등급
글로벌이머징마켓 혼합재간접형	이머징마켓주식 50%이내, 국내채권 40%이내, 나머지 유동성 자산 투자	위험 회피형	5등급
혼합간접형	국내채권 70%이내, 해외주식 30%이내, 나머지 유동성 자산 투자	위험 회피형	5등급

※ 이 보험은 투자형 상품으로 납입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납입원금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국내 및 해외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의 특별계정운용보수 이외에 수익증권 투자 관련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계정에서 인출하여 사용합니다.

※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 해외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펀드 포트폴리오는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시장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및 자산별 편입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이머징마켓혼합재간접형, KO-BRICs주식형, BRICs주식형, 글로벌인덱스리스크컨트롤형, 인공 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 펀드의 경우, 별도로 환헷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 또는 손실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혼합간접형, 글로벌리츠형,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글로벌베트남주식재간접형, 인컴엔그로스채권형, 유럽배당 주식재간접형, 차이나포커스채권형, 인디아포커스채권형,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글로벌하이테크채권재간접형, 베스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유럽주식재간접형, 월드와이드퀀수머주식재간접형,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형, 재팬인덱스형, 팀챌린지자산배분A형~F형, 미국그로스 주식재간접형,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 펀드의 경우,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환헷지가 가능한 주요 외국통화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실행합니다. 그러나 펀드 내 설정과 한 시, 시장상황, 환헷지 비용 등에 따라 완전한 환위험 회피가 안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새로운 펀드가 추가되거나 펀드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대상 중 보험관련 법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제한이 있는 경우 펀드의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펀드 포트폴리오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사입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펀드의 선택 및 변경

- (1)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펀드 중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별로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펀드별 기본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 (2) 계약자는 보험년도 중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중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적립금의 이전 또는 펀드의 자동재배분에 따른 펀드의 편입비율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펀드설정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펀드설정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합니다.
- (4) 회사는 펀드적립금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다만, 이전하는 펀드적립금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5) 보험계약자의 '변액보험 가입성향 진단'에 따라 펀드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펀드자동재배분

- (1)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펀드자동재배분 주기(3개월, 6개월 중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때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 됩니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 (2) 보험기간 중 펀드 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의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펀드자동재배분 주기(3개월, 6개월 중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 단위로 자동재배분됩니다.
-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채권형펀드와 MMF재간접형 펀드의 편입비율의 합을 60%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형펀드와 MMF재간접형 펀드의 펀드자동재배분 후 적립금의 합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60%미만인 경우 해당 펀드자동 재배분 실행일에는 펀드자동재배분을 할 수 없습니다.
- (4)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5)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자동전환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며, 펀드자동재배분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펀드자동전환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펀드자동전환옵션

- (1)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펀드자동전환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채권형펀드 또는 MMF재간접형 펀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계정적립금이 계약자가 정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채권형펀드 또는 MMF재간접형 펀드를 제외한 펀드의 적립금 전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채권형 펀드 또는 MMF재간접형 펀드로 자동이전합니다.
- (2) 계약자는 최초로 펀드자동전환옵션 선택시 110%에서 200% 범위내에서 10% 단위로 목표수익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 목표수익률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대비 특별계정 적립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 (4) 회사는 펀드자동전환옵션 실행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가 선택한 채권형 또는 MMF재간접형으로 자동이전되었음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5) 목표수익률 도달시 펀드자동전환옵션은 해제되며, 이후 펀드자동전환옵션을 재신청시 선택할 수 있는 목표수익률은 직전 선택하였던 목표수익률 이상을 10%단위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예 : 직전 달성하였던 목표수익률이 120%인 경우, 재신청시 130%이상 선택가능)
- (6)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전환옵션을 매년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7) 펀드자동전환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없으며, 펀드자동전환옵션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8) 펀드자동전환옵션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되며, 펀드자동이전 시 펀드자동전환옵션 실행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합니다.
- (9) 펀드적립금의 이전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전 요청일부터 펀드적립금의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펀드자동전환옵션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변액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본 상품은 투자형 보험상품으로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며, 주식시장의 하락 또는 채권 시장의 변동으로 투자리스크가 발생하여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위험 : 변액보험은 투자형 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투자손실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채권, 주식, 수익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운용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환율변동 위험 :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 해외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 가치가 변동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은 만기가 없고 가격 변동성이 커 환위험 헷지금액을 확정하기가 어렵고 펀드 변경 등의 선택에 따라 압출입 자금의 관리가 어려워 환위험 헷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

- ▶ 최저연금적립금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합니다.
- ▶ 이 계약은 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으로,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추가납입보험료

- (1) 적립형 :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로 구분 됩니다.
- 가.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매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에 기본 보험료와 함께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연금개시시점 전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1회에 10만원 이상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변경 및 중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및 변경, 중지를 신청한 경우 해당내용은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익월 납입기일부터 적용합니다.
 - 해당 시점의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차회 이후의 월정기 추가 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 납입되지 않은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나. 수시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시점 전까지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수시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가능합니다.
- 다.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 ① 계약자가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 보험료 납입 총액의 2배 이내로 합니다. 다만,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 추가 납입보험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10만원으로 합니다.
 - ②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과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선납포함)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③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 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합니다.
- (2) 거치형
 - 가.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연금개시시점 전 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0%이내이며, 연간(보험 년도 기준)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 이내로 합니다.
 - 다.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 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합니다.

계약자적립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서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공제액(당월분의 사망보장 위험보험료와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리비용) 등) 및 중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료의 선납에 관한 사항(적립형에 한함)

- 가.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제외하고 6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나.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며, 해당 보험료는 월계약 해당일에 대체합니다.

변액보험 보험계약대출 이용방법 변경특약

- 계약자는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 관련 내용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 지급방식"과 "일반계정 지급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특별계정 지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은 주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일반계정 지급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은 변액보험 보험계약대출 이용방법 변경특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계약자가 일반계정 지급방식을 선택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계약대출 금액은 일반계정에서 대출신청일에 지급되며, 회사가 해당 보험계약대출금액을 지급하더라도 특별계정에서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 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이 때, 공시이율은 주계약의 체결시점에 판매 중인 동일한 상품군(저축성, 연금, 보장성)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주계약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종류가 전환된 경우는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전환된 계약에 해당하는 상품군의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 회사는 특별계정 지급방식과 일반계정 지급방식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하고, 계약자는 특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각 지급방식에 따른 장단점 등 비교설명
 - (2) 각 지급방식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액 지급일
 - (3) 각 지급방식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이율
- 이 특약을 적용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용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 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나.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할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고,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 ① 적립형 : 인출 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② 거치형 : 인출 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 기본보험료의 30% 미만의 금액인 경우
 - 다.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중도인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4회까지 면제됩니다.
 - 라. 가에도 불구하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총 인출금액(중도인출 금액과 정기중도인출금액의 합계)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마. 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회사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 바.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합니다.

(2) 정기중도인출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적립형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후부터, 거치형의 경우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이하 '정기중도인출금액'이라 합니다)만큼 매월 자동적으로 중도 인출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하 '정기중도인출서비스'라 합니다.)

나. 계약자는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정기중도인출서비스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정기중도인출금액'은 다음의 범위 이내에 선택가능하며 매회 지급금액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기중도인출금액'은 10만 원이상 만원 단위로 선택해야 합니다.

- ① 적립형 :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0.1% ~ 3.0% 이내
- ② 거치형 :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0.1% ~ 0.5% 이내

라. 회사는 '정기중도인출금액'을 「신청일 + 제2영업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매월 지급일에 지급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도래하는 영업일에 지급하며, 해당일의 지급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마지막 날을 지급일로 합니다.

마. '정기중도인출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정기중도인출서비스'는 별도의 수수료로 부과하지 않으며, '(1)'의 '가'에서 정한 중도인출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중지합니다. 다만, '㉑' 내지 '㉔'에 따라 '정기중도인출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었음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계약자가 '정기중도인출서비스'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 ② '정기중도인출금액' 인출 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 다음의 금액 미만인 경우
 - ㉠ 적립형 : 500만원 미만
 - ㉡ 거치형 : 기본보험료의 30% 미만
- ③ '정기중도인출금액'이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④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총 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과 정기중도인출금액의 합계)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 이상인 경우

아. '정기중도인출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 및 특약(우)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 및 (우)하도변액연금전환특약의 경우,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함)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01. 보험계약사항 기본 확인

계약자는 계약 청약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02.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자필서명(납입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납입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03. 청약철회 청구제도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CSC)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 도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된 경우 회사가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 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05. 보험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보험약관과 계약자보관을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납입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06. 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07. 저축성보험 부리이율에 대한 사항

이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보험료만 특별계정에 투입,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적립됩니다.

08.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09.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은 투자형 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10.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사고 및 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 후 2년 이내 자살 시 지급을 제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존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사항

기준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1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함)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 *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2) '(1)'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 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적용대상(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14. 불만족상담 및 민원상담 안내

어떤 내용이든 고객님의께서 만족하지 못하신 점을 말씀해 주시면, 성심껏 듣고 처리하여 서비스 개선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불만 접수(상담) 방법 안내>

-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구.여의도동45-21) ABL타워 소비자부 (우)07332
- 전화: ABL생명 콜센터-국번없이 1588-6500 (이동전화: 02-1588-6500)
- 팩스: 02-3787-8719
- 인터넷: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 e-mail: customer@abllife.co.kr
- 기타 상담(문의):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전화 1588-4404, 팩스 02-3787-8745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보호실>

서울본부: 02-2262-6600 / 수도권지역본부: 02-2262-6570 /
영남지역본부: 051-558-7801~4 / 대구지부: 053-427-8051 /
호남지역본부: 062-350-0111~4 / 중부지역본부: 042-242-7002~4 /
원주지부: 033-761-9672~3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32 (이동 전화는 지역 번호-1332)

15. 보험계약관련 조회시스템 운영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시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www.abllife.co.kr(당사 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 공시: www.kfia.or.kr(생명보험협회)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조건으로 보험판매를 할 수 없고, 타 보험회사의 유사상품 3종 이상을 필수적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은행의 지정된 보험판매자만이 보험판매가 가능하고, 전화 등 고객과 비대면 방식의 보험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Tel: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www.fss.or.kr)

판매회사

보험사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0733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ABL 타워
콜센터 1588-6500 방카슈랑스사업부 02-3787-7777

2020. 12. 18. 방카슈랑스사업부 제작
판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PA329호(2020.12.16)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2020-03657(2020.12.18)
유효기간: 심의필 받은 날로부터 1년